

함께 웃는 학교,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 
늘 품우리가 함께합니다.

사랑 나눔 배려

# 학생생활교육



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
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 
[민주시민교육과]



## 교사 극단 선택·교감 뺨 때린 초등생... 교사 "안심하고 교육 전념할 때 아냐"

교총, 서이초 1주기 4264명 설문  
'아동복지법 개정' 시급한 과제 꼽아

"일방적 폭행 아니다"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어머니에 상담·교육 조치

3학년 초등생, 교내서 교감 뺨 때리고 욕설  
전북 경찰, '교감 폭행' 초등생 어머니 상담 조치

등록 2024-07-02 오후 5:48:54  
수정 2024-07-02 오후 5:48:54

가 가

"교감 뺨 때린 초3, 부모는 학교 쫓아와 교사 폭행...엄벌해주세요"



## 법적 근거



학생생활지도

학생생활교육위원회

학생생활규정



방법	방식
조언	문제인식시 언제든지 조언 가능, 권고
상담	상담예약 및 사전협의, 상담거부 및 중단 가능
주의	학교안전 및 질서유지 저해 우려시 주의
훈육	지시, 제지(물리적 제지 포함), 분리, 물품조사 및 분리보관
훈계	과제부여(대안행동, 성찰문, 원상복구)
보상	칭찬, 상 등



## 상황별 Q&A

☞ **학생생활규정 개정 시,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나요?**

○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, 제59조의4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관련 법령 및 고시 해설서에 따른 **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개정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해야** 합니다.

[2024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참고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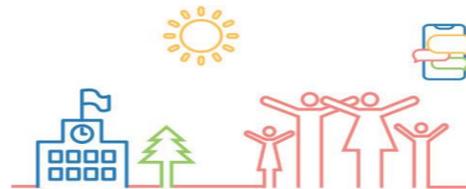


## 상황별 Q&A

### ☞ 수업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 가능한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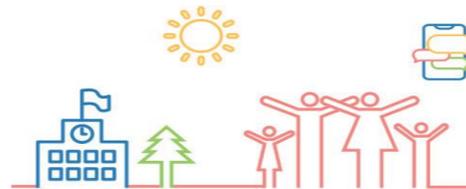
-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**원칙적으로 금지**됩니다. 다만, 교원이 **수업 중**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별도의 절차 없이도 **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**할 수 있다.

\*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허가에 필요한 절차, 신청서 구비 증명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**학생생활규정**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.



## 상황별 Q&A

- ☞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**부적합한 물품**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**주의(지적과 경고)**를 줄 수 있습니다.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할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**학생생활규정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부적합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(3회차)**할 수 있습니다.



## 상황별 Q&A

○ **생활지도에 불응**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장은 **학생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을 징계**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**교육활동 침해 행위**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※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**학생생활규정에 불이행 및 거부에 대한 징계 규정 포함 필요**



## 상황별 Q&A

☞ **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은 어떻게 지도하나요?**

-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가 추구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착용 등 복장과 바람직한 용모에 대한 사항은 교육 3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**학생생활규정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도**해야 합니다.



## 상황별 Q&A

☞ 제8조제4호(생활지도의 범위/그 밖에 분야/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)의 사례는 무엇인가요?

○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**학생생활규정**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1. 학교시설물 이용 관련 규정
2.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(음주, 흡연 등)
3. 학교 내 개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(분실 등) 등



## 상황별 Q&A

☞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**조언, 상담,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**  
**거친 후 제지를 실시할 수 있나요?**

-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다만, **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**를 할 수 있고, **생명·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물리적 제지**를 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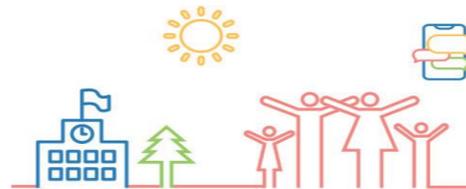


## 상황별 Q&A

### ☞ 제12조제6항(생활지도의 방식/훈육/분리)의 절차는?

○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를 우선 실시한 후 제3호 또는 제4호를 실시해야 합니다. 이 때 **학생생활규정에 분리 요건, 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이 포함** 되어야 함.

※ **수업 차시 단위로 분리**, 분리 및 가정학습은 당일에 해당함.



## 상황별 Q&A

- ☞ **고시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라 ‘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’의 정확한 의미는?**
- ‘정규수업 이외의 시간’은 일과 중 매교시별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, 모든 수업이 종료한 일과 후의 시간을 의미하며, ‘특정 장소로의 분리’는 교무실, 특별활동실 등 분리 조치를 위해 **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** 의미합니다.



## 상황별 Q&A

☞ **학생 분리 지도 시, 분리 장소 및 인계 ·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?**

○ 학생 분리를 위한 절차 및 장소,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**학생생활규정**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학교에서 별도의 **‘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’** 등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 · 관리 하여야 함



##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

1. 학생, 교원,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가?
2.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이 40% 이상인가?
3. 제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 
[분리 장소 ·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]이 있는가?
4.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알리미와 홈페이지[공지사항]에 공시하는가?
5.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?
6.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[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 
특별교육이수, 출석정지, 퇴학처분] 이외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가?



##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

7. 징계 사유 및 기준에 ‘도박을 한 학생’ 관련 내용 포함 여부?
8. 상벌점제(그린마일리지 포함)를 운영하는가?
9. 구[舊]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인 ‘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’ 는 규정이 있는가?
10. 선도부나 바른생활부 등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가?
11. 성적으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가?
12.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가?





# THANK YOU

**사랑 나눔 배려**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**늘품우리**[[office.jbedu.kr/woori](http://office.jbedu.kr/woori)]가 함께 합니다.